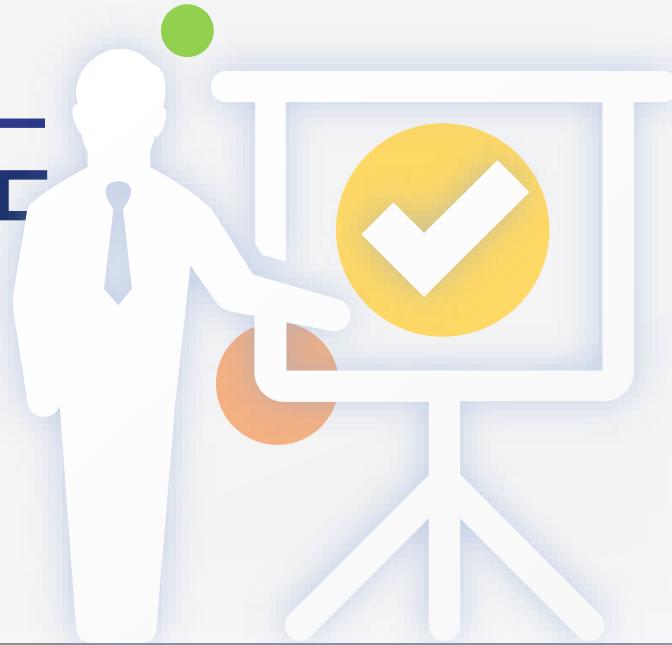




•
국민과 함께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청탁금지제도

온라인 설명회





청탁방지담당관

협조 및 안내사항



청탁방지담당관 | 법률 살펴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참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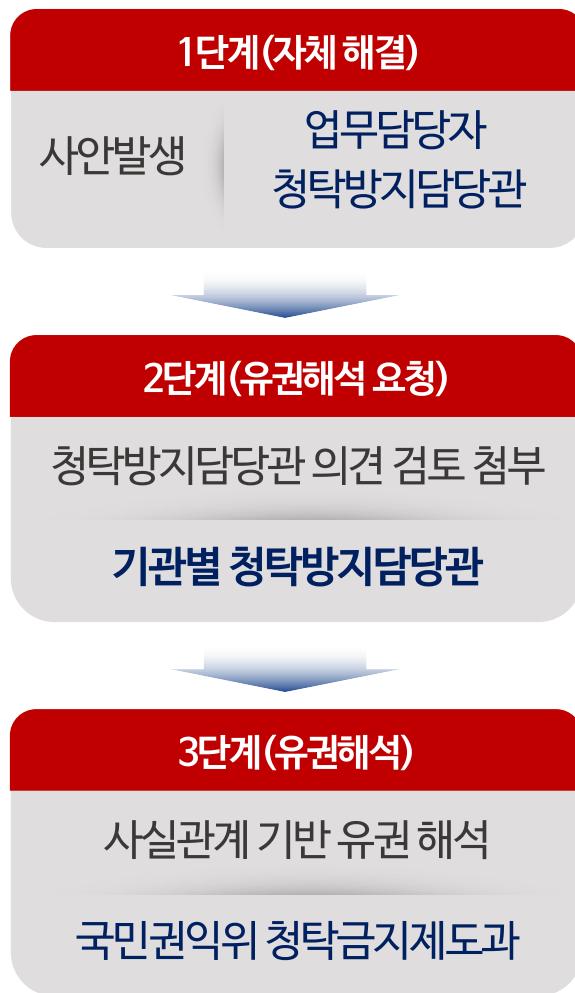
제42조(교육 등)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 | 상담·교육 활용자료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Cheongryeon Yenkyeon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large blue header with the text "청렴연수원" (Cheongryeon Yenkyeon) in white. Below the header,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various links such as "청렴교육", "청렴교육 신설", "청렴교육 자료", "청렴교육 강사", "연수원 소식", "연수원 살펴보기", "나라배움터", "네이버스", "청렴연수원", "체험으로", "로그인", and "회원가입".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sections for "청렴교육 자료" (with a link to "청렴교육 철고지도"), "청렴교육 시청각자료" (with a link to "방한정보"), and "방한정보".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n open book with a magnifying glass over it, and text about the "청렴교육 시청각자료" section. It includes a link to "총 106 개시사례 등록 (1 / 1)" and a search bar. Below this, there are three smaller images showing the exterior of the Cheongryeon Yenkyeon building, a person interacting with a touch screen kiosk, and a person holding a smartphone displaying a mobile application.

청탁방지담당관 |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386호(2018.3.8.) 관련

000기관 유권해석 요청 서식(예시)

현황

개요

구체적 사실관계

※ 부정청탁(청탁자, 수탁자), 금품등(제공자, 수수자) 관련 세부적 사항

질의 사항

질의 내용

※ 관련 규정 등 명시

기관 의견 (청탁방지담당관 의견 필수)

업무 담당 부서	청탁방지담당관	비고

※ 의견에 대한 구체적 이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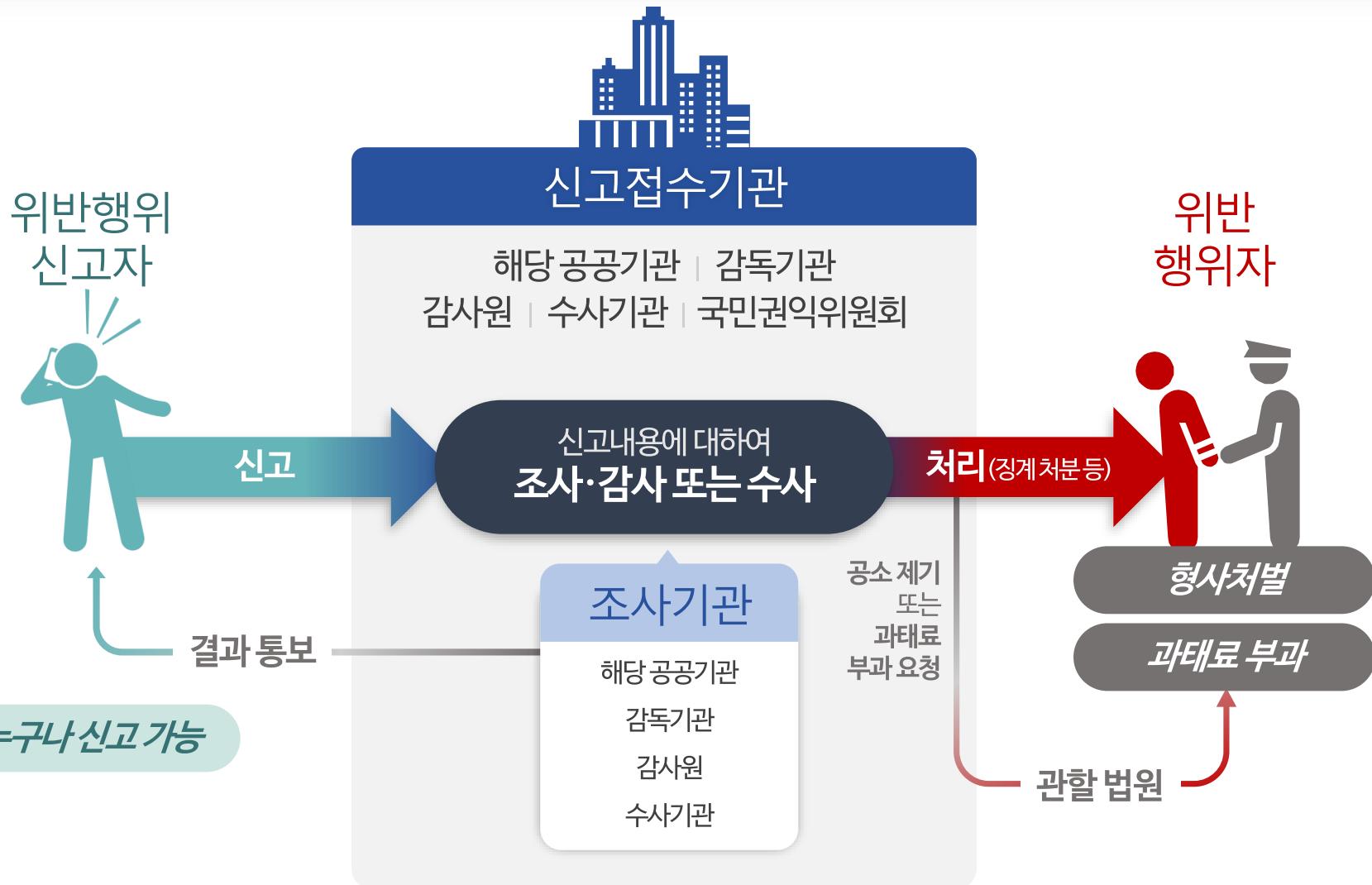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유의사항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1)



사실 관계



지자체 소속 공직자 A는 주택재건축정비 관련 민원 처리 후
민원인이 감사표시로 **12만여원 상당의 과자류 및 주류를**
주려고 하자 여러 차례 거절했으나 민원인이 주고 그냥
가버리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함.**
해당 소속기관장은 제공자인 민원인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 종결

검토



소속 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함**
(법 제23조 제7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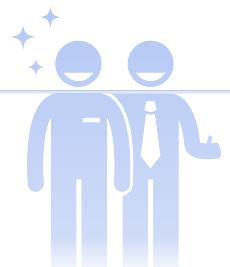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처리 유의사항(2)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가 액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 장치로 가능



참고 판례 (2021과396)

인정 사실



A주식회사 현장소장 B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698,000원 상당의 금품 등 제공**

판단



A주식회사는 B의 **사용자로서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사례·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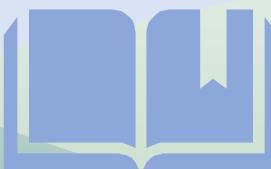
목 차

1.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2. 부정청탁 금지

3. 금품등 수수금지

4.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제정 목적

공직자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적용대상

공직자등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민간

공무수행사인



지자체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수,
선생님, 기자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 공무수행사인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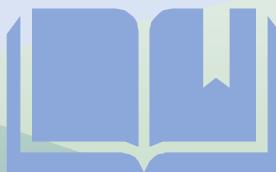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	적용대상 O	적용대상 X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 공무원 임용유예자• 용역업체 직원• 공공기관자회사임직원(공공기관 지정X)
공직유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임 이사, 감사•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언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기자 등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 코치• 총장, 학장, 교수 등 교원•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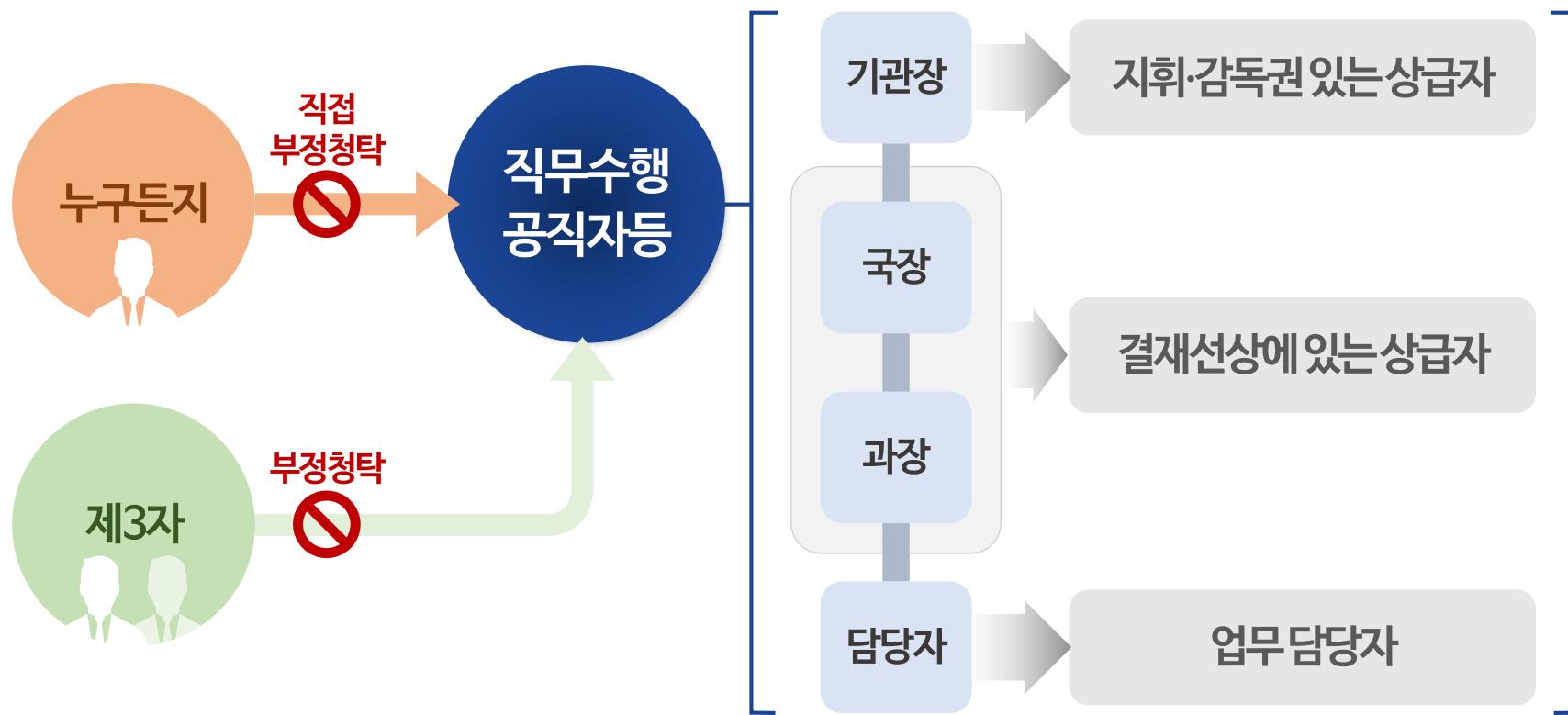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

-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



부정청탁 금지 | 14가지 대상직무

- | | | | |
|----|------------------------------------|----|--------------------------------|
| 1 |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리 | 2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면제 |
| 3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 5 |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 입찰·경매·개발·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8 | 보조금·출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 9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10 | 입학·성적·논문심사 등 업무 처리·조작 |
| 11 |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결과 조작 등 |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등 | 14 | 사건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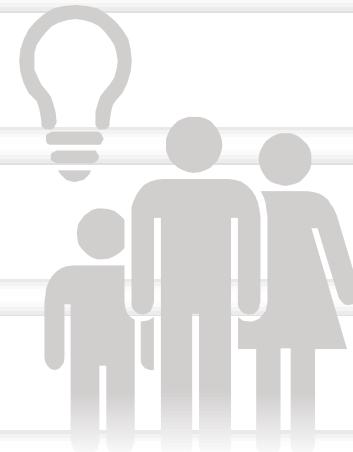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5 사실확인, 증명 등 요구

6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 X
징계대상 O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일반인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금지 | 사례

민원인 A

친구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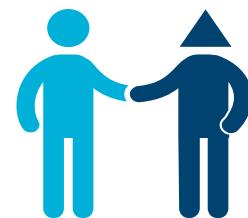
친구 C

담당공무원 P

허가가 날 수
있게 해 주게!

A 허가 신청 건
잘 좀 처리 해 주게.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민원인 A



친구 B(일반인)



담당 공무원 P



친구 C(공직자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 B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 C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판례(1)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과187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하는 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판례(2)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 **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판례(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과29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A는 C경찰서의 교통관리계장으로서 신호등제어기의 설치 위치의 지정이나 신호등제어기의 조작, 신호등 고장시 수리를 위한 교통통제 등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C경찰서가 아닌 D시청이고, 경찰공무원이 그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체에 대한 위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사유

1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
장기적·지속적 친분에 따른 금품등

6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등

8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판사의
식사비 2만8천원을 몰래 지불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므로 음식물 X
과태료 11만2천원 부과

3만원 외식상품권 제공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므로 음식물 X

※ 유가증권은 선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예) 상품권, 기프티콘, 관람권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이 가능한지?



한우는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 가능함

질의로 보는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 아님

 판단기준

**수수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목적이 부정된 사례

-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외부강의등 | 신고의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화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직무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 제한 가능

외부강의등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2.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회의 등
3. 강의 · 강연 · 기고 등

외부강의등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 해당 사례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 · 강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발표 · 토론 · 심사 · 평가 · 의결 등
-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공청회 · 간담회 등의 좌장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신문 · 잡지에의 기고

외부강의등 해당하지 않는 사례



- 법령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시험문제 출제
-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언론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출연
- 1:1이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 · 자문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외부강의등 | 사례금 상한액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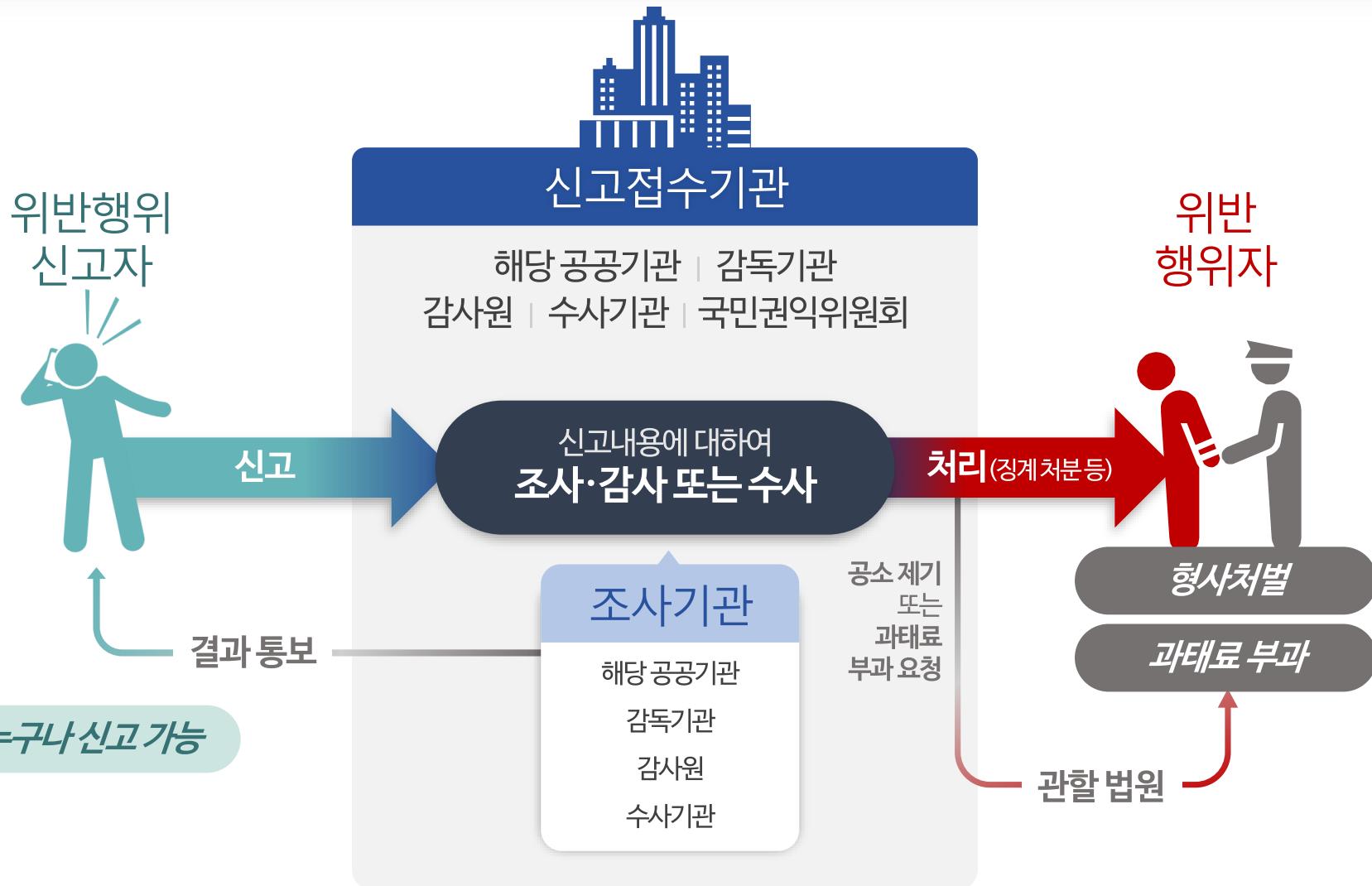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신고 처리 절차



대응 조치 | 공직자등



부정청탁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금품등 수수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 포함)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거부의사 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대응 조치 | 소속기관장



부정청탁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금품등 수수

인도받은 수수 금지금품등
사진 촬영, 영상 녹화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

주요 내용 기록·관리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청탁금지법이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